소프트웨어 공급 및 용역 제공에 관한 약관

소프트웨어 공급 및 용역 제공에 관한 본 약관(이하 "본 약관")은 본 약관의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관계에 필요하고 관련된 모든 상세 사항을 규율한다.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지칭한다.

본 약관에서, "**EPLAN**"이란 관련 주문 확인서에 기재된 EPLAN 당사자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하 "EPLAN")을 의미한다.

본 약관에서, "**고객(Customer)**"이란 사법 또는 공법에 의한 회사, 상인, 법인 또는 공법에 의한 특별 펀드로, 주문 확인서(order confirmation)에 EPLAN 의 계약 상대방으로 기재된 자(이하 "고객")를 의미한다.

본 약관에서, "**계열사(Affiliates)**"란 법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로, a)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대주주) 및 이러한 과반수 지분 보유의 대상이 되는 회사, b)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지배 관계) 및 이러한 지배 관계의 대상이 되는 회사, 또는 c) 공동 경영 대상 회사나 상호 독립적인 관계(그룹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계열사")를 의미한다.

A. 고객과 EPLAN 간 협력의 원칙

1. 계약의 목적

1.1 계약의 목적은 EPLAN 의 각 주문 확인서와 본 약관 등 EPLAN 의 각 주문 확인서에 언급된 문서 및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

1.2 가격, 수량, 인도일, 인도 조건, 기술, 자료, 사양 및 품질 명세서 등과 관련하여, 주문 확인서 및 협상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협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환된 기타 계약 초안에서 벗어난 청약(offer)은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본 약관의 적용

2.1 주문 확인서 이외에, 본 약관은 EPLAN 과 각 고객 간 모든 법적 거래의 기초가 되며,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2.2 본 약관에서 벗어나거나 본 약관과 상충하는 고객의 계약 조건은, 그로 인하여 주문 확인서가 중대하게 변경되는지 여부 및 EPLAN 의 제품공급 및 용역에 대한 고객의 수령 및 이에 대한 금전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채택될 수 없다.

2.3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은 언제나 우선한다.

3. 대금, 보수 및 기타 비용

3.1 계약 체결 시에 청약에 기재되고 약정된 모든 가격 및 라이선스 사용료(이하 "대금")는 "공장인도조건(EXW)" (INCOTERMS 2010)으로 하고 포장비용 및 보험료는 제외한다.

3.2 제품설치, 교육,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자문에 대한 보수(이하 "보수")는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EPLAN 의 대금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고,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된 시간 및 자재 기준(time and material basis), 즉 시간당 또는 일당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3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모든 대금 및 보수는 부가가치세, 기타 관련 세금, 관세, 부과금 및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3.4 아래 Chapter B, Part II 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당은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일당을 1/8로 나누어 산정하여 청구된다.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청구된다. 이동 시간 및 이동 비용은 EPLAN 이 수시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소재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5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EPLAN 에게 발생하는 모든 이동 비용 및 기타 필요한 비용(즉, 숙박비, 배달(courier) 및 번역 용역 비용)은 증빙 서류로 증명되는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청구된다. EPLAN 이 해당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일시불 금액은 실제로 발생된 비용에 따른 정산 금액을 대체한다.

4. 대금의 지급, 상계 및 유치권

4.1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EPLAN 에게 지급할 대금 및 보수에 대한 청구 금액은 a) 고객의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떠한 금액도 공제함이 없이 b) EPLAN 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객이 달리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는 청구서 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금지급 기한 도과 시에는, 고객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2 고객은 다툼이 없거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청구 금액에 대해서만 EPLAN 의 청구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고객은 이러한 청구가 동일한 법적 거래에 기반한 경우에 한하여 유치권(right of retention)을 갖는다.

5. 제품공급 및 용역제공의 유형, 범위 및 장소

5.1 EPLAN 은 그 선택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a)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매체에 의한 물리적 형태로 "공장인도조건(EXW) 또는 공급센터(Supply Centre) 조건" (INCOTERMS 2010)으로 공급. 이 경우, EPLAN 은 운송 형태, 운송로 및 운송인 등을 정한다.

b) 무형의 형태 즉, 해당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를 위한 시스템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EPLAN 이 제공하는 링크(link)를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 형태로 공급. 해당 링크 및 검색 가능한 관련 정보는 계약 체결 후 고객에게 직접 전송됨. 공급제품 및 용역의 품질은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하고 고객에게 제공된 용역 사양이나 기술 사양과 더불어 공급제품 및 용역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된 관련 문서에 따름.

5.2 제품의 일부 공급은 고객에게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5.3 소프트웨어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목적 코드 또는 SAP 환경에서 ABAP 형태로 약정된 계약 용도로만 공급된다. 고객은 소스 코드(source code)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사용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 달리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스 코드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5.4 제품의 설치, 실행(implementation), 특화(customizing), 개작(adaptation), 컨설팅, 교육 및 기타 지원 등 용역 제공 및 관련 업무수행은 아래 Chapter B, Part II 이하의 상세 규정에 따른다.

5.5 물리적 형태의 제품공급의 경우, 인도일 및 위험 이전 시점은 EPLAN 이 데이터 매체 및 해당 문서를 운송인에게 전달한 시점과 기타 소프트웨어가 위 Chapter A, Section 5.1에 따라 검색될(retrieval) 준비가 되어 있고 EPLAN 이 고객에게 검색 정보(retrieval information)를 전송한 시점으로 한다.

5.6 계약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일은 구속력이 없고 추정일에 불과하다. 인도일은 (해당되는 경우) EPLAN 의 공급업체가 EPLAN 에게 적시에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7 명시적으로 합의된 인도일이 EPLAN 의 귀책사유로 인해 도과되는 경우, 고객은 최소 1주일 이상의 공급기한을 EPLAN 에게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8 EPLAN 이 a) 고객의 협조나 정보를 기다리고 있거나 b) EPLAN 의 업무수행이 제3자나 EPLAN 그룹 내부의 파업이나 직장폐쇄(단,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노동분쟁이 합법적인 것에 한함), 공적 개입, 법적 금지사항이나 EPLAN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기타 상황(이하 "불가항력 사유")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제품공급 및 용역 제공 기한은 불가항력 사유가 존재한 기간과 그러한 사유 종료 후 합리적인 업무 재개 기간(이하 "중지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EPLAN 은 중지기간 동안에는 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PLAN 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해당 사유와 예상 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유가 3개월 이상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우, 양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상 의무 이행으로부터 면책된다.

5.9 EPLAN 에 의한 계약 이행은 EPLAN 이 국내 및 국제 수출 및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재나 통상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고객의 협력의무 및 정보 제공 의무

6.1 고객은 EPLAN 이 제공할 제품 및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책임의 부담은 시스템 환경(system requirments) 및 고객의 근로자 및 다른 직원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처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2 고객은 제품 및 용역에 의한 추가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dimensioned)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

6.3 고객은 제품 및 용역을 사용하기 전에 하자 여부와 기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설정에서의 이용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이는 하자보수 보증(warranty) 및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교부물 및 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4 고객은 제품 및 용역의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EPLAN 이 제공한 설명서(notes) 및 최소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6.5 고객은 제품 및 용역의 계약상 약정된 용도에 필요한 사항(예를 들어, 직원, 작업장 및 이에 대한 접근 권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통신 시스템)을 필요한 범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6 EPLAN 이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시정할 수 있도록, 고객은 하자 진단 및 시정과 관련하여 EPLAN 에게 EPLAN 의 제품 및 용역, 특히 이들의 소프트웨어 및 부품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7 고객은 일반적인 법률, 영업 관리 및 조직 원칙, 특히, IT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합리적이고 적절한 주기(application-adequate intervals)에 따라 정기적으로 백업(backs up)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EPLAN 이 상기의 목적으로 상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접근권한을 부여 받는 경우, 고객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데이터(예를 들어, 프로젝트 파일)를 위에 상기의 방법으로 백업한다. 데이터의 민감성 및 관련성 정도에 따라 고객이 해당 데이터를 접근 전에 존재했던 조건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즉시 또는 단기간 복구함을 보증하는 경우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은 "적절한("application-adequate)" 것으로 본다.

7. 품질보증; 행위의 제한

7.1 용역의 약정상 용도가 제3자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합의된 업무수행 요건(performance characteristics) 및 용역 범위만이 제품 및 용역 제공 조건을 구성한다. 고객은 제품 및 용역 수령 후 즉시 이를 검수하고 명백한 하자 및 숨은 하자 존재 여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EPLAN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품 및 용역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모든 하자는 이해 가능한 서면형식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EPLAN 이 해당 하자를 인식한 후 지체 없이 하자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은 하자 및 그 원인 발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 제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EPLAN 은 계약에서 합의된 업무수행 요건이 충족되고 약정된 업무수행 범위(scope of performance)에 부합하며, 계약상 합의된 범위 내에서의 업무수행이 제3자의 권리와 상충하지 아니함을 아래 조항에 따라 보증한다. 제품 및 용역의 품질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업무수행 상세조건(performance specifications)을 구성하나, 품질이나 내구성에 대한 보증은 구성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재현 또는 달리 확인이 가능한 하자와 관련한 경우에만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고객은 해당 하자를 이해 가능한 서면형식으로 하자를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해당 하자 및 고객이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를 지체 없이 EPLAN 에게 알려야 한다. 고객은 하자 및 그 원인의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3 EPLAN 이 하자를 시정할 의무가 있는 경우, EPLAN 은 그의 선택에 따라 후속 이행(subsequent performance)을 통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하자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합리적인 대안을 통하여 물리적 하자를 시정하여야 한다.

7.4 소유권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EPLAN 은 후속 이행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EPLAN 은 그 선택에 따라 고객이 제품 및 용역을 법적인 이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5 품질보증은 EPLAN 이 수시로 공개하는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이하 "새로운 버전")과 관련된다. 고객은 해당 버전이 하자의 회피 또는 시정의 목적에 적합하고, 약정된 기능 범위가 유지되며, 해당 버전을 인수(acceptance)한 결과 고객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버전(즉, 제품 및 용역과 관련된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 특히, 업데이트, 핫픽스(hotfixes), 패치(patches), 서비스 팩 등을 말하나, 다른 모듈, 제품, 애드인(add-ins) 및 애드온(add-ons)은 제외함)을 인수한다.

7.6 EPLAN 은 고객이 최소한의 합리적인 대금이나 보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후속 이행을 할 수 있다.

7.7 후속 이행이 합리적인 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은 계약을 철회하거나 대금이나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단, 고객이 EPLAN 에게 하자의 시정 기한을 지정하고 해당 기한 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바 없이 도과한 경우에 한한다. EPLAN 은 계약에 명시된 손해배상의 한도 내에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7.8 고객의 품질보증 청구는 고객이 변경하거나 의도 또는 약정된 시스템 환경 이외의 다른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된 제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객은 하자가 다른 용도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7.9 제7조에 의한 청구의 시효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8. 배상 책임

8.1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을 제외하고, EPLAN 은 EPLAN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본의무(cardinal duties)란 당초에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상대방 계약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의존하여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의미한다.

8.2 강행법규하의 책임 및 Chapter A, Section 10.4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법 제도하에 특별한 법률 규정에 따른 특별 규정이 존재하는 한 생명, 신체 또는 건강과 관련된 위반 및 제조물책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보증은 위에 명시된 책임의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8.3 기본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무(non-cardinal duties)를 위반한 경우, EPLAN 은 계약 체결 시 일반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재산 및 금전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총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에서 합의된 EPLAN 의 대금 및/또는 보수 총액이 되며, 총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불확정 기간으로 인하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 직전 12개월 이내에 EPLAN 에게 지급된 총 보수 또는 월 평균 보수가 기준이 된다. 고객은 EPLAN 이 이 보다 더 많은 손해를 예상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8.4 다른 모든 경우에는, 배상책임은 배제된다. 이는 간접 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수익손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5 EPLAN 은 상대방 과실에 따른 책임의 감면을 주장할 권리(right to plead contributory fault)가 있다.

9. 비밀유지 및 데이터 보호

9.1 계약 당사자들은 각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기술정보, 재무정보 기타 상업적 정보 또는 기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계약 당사자들의 계열사는 제3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9.2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는 대중에게 공개되고, 당사자에게 이미 알려지거나,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또는 당사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을 원용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9.3 비밀유지 의무는 개별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9.4 EPLAN 은 관련 정보 보호법, 지침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할 수 있다.

9.5 EPLAN 이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9.6 EPLAN 은 EPLAN 의 모든 근로자들이 관련 정보 보호, 통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 보호 및 특별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하였음을 보증한다.

10. 최종 조항(Final provisions)

10.1 EPLAN 은 그의 재량으로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업무의 이행을 자신이 선정한 하도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PLAN 은 하도급업자의 업무이행에 따른 결과물이 자신의 업무이행에 따른 결과물인 것과 동일하게 하도급자의 업무이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0.2 본 약관의 변경 및 보충은 효력 발생을 위하여 서면으로(팩스 및 이메일 포함) 작성하여야 하고 변경 및 보충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본 조항의 변경에도 적용된다. 구두형식의 부가 약정은 체결된 바 없다.

10.3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허용될 수 없는 기한이나 차이(gap)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무효로 된 조항을 계약 당사자들의 경제적 및 법적 의도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조항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0.4 본 약관과 계약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계약 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및 섭외사법은 관할조항을 포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10.5 본 약관으로부터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은 EPLAN 의 설립지 관할로 한다. EPLAN 은 계약 상대방의 등기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6 개별 계약은 EPLAN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해당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 될 수 없음)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단, 양수인이 합병, 양도, 통합, 인수, 법적 구조조정, 본 약관의 사안과 관련된 자산이나 상당한 자산을 매각하여 양도인의 법적 승계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 고객 및 EPLAN 간 협력에 관한 특별 조항

I. 표준 소프트웨어; 제3자 소프트웨어

1. 기본사항

1.1 본 약관에서, "표준 소프트웨어(Standard Software)"란 관련 응용프로그램 설명서(application documentation)를 포함하여, 개별 시장에서 다양한 고객들 및 그들의 요구사항을 위해 개발되어/또는 그들에게 제공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즉, 프로그램, 프로그램 모듈, 응용프로그램, 툴(tools), 애드인(adds-ins) 및 기타 선제작 솔루션 등)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표준 소프트웨어"는 특히, EPLAN 이 시장에서 EPLAN 이 정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제품 또는 개인 고객을 위해 독점적으로 개발 및 제공된 제품이 아닌 제품(이하 "표준 소프트웨어")을 포함한다.

1.2 본 약관에서, "다른 제조사의 소프트웨어"란 EPLAN 이 개발하지 않고/또는 EPLAN 이 저작자, 공동 저작자 및/또는 소유자가 아닌 소프트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이하 "제3자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1.3 Chapter B, Part I Section 1.2에서 정의된 "제3자 소프트웨어"는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하 "OSS")를 포함한다.

1.4 소프트웨어가 명칭공간(namespace)을 정한 경우, 경우에 따라 제조사 또는 EPLAN 의 명칭공간은 표준 소프트웨어로 간주되며, 해당 명칭공간을 벗어난 개발은 표준 소프트웨어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사용권한 및 라이선스 부여

2.1 EPLAN 은 계약 체결 시 본 약관 조항 및 유효한 EPLAN 의 라이선스 모델에 따라 표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사용권한(이하 "라이선스")을 고객에게 부여한다. 해당 범위를 초과한 표준 소프트웨어 사용은 금지되고 이에 대해서는 언제나 EPLAN 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2.2 내부 사용목적(Internal application purposes)을 위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EPLAN 은 계약에 명시된 각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계약에 개별적으로 명시된 라이선스에 관하여 해당 청구금액 완납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a) **단일 사용자 라이선스(Single-user license):** 기한 제한이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한으로, 그 내용 및 사용공간은 단일 사용자 하드웨어에 대한 1회 설치로 제한됨.

b) **넷 라이선스(Net license):** 기한 제한이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한으로, 계약상 명시된 고객의 본점 소재지 국가에 한하여 내부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대한 설치로 제한됨. 이와 관련하여, 최대 병행 사용자 수는 EPLAN 이 제공한 라이선스 관리 소프트웨어에 따라 취득되어 운영되고 있는 라이선스 수에 따른다. 본점이 유럽경제지역(EEA)내에 소재한 경우, 라이선스는 EEA 전역에서 유효하다.

c) **WAN 라이센스:** 고객이 "WAN 넷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 위 b)호 규정이 적용되나, 그 사용은 전세계적으로 허용된다.

d) **지정된 사용자 라이선스(Named user licence):** 해당 소프트웨어는 등록되어 있는 지정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제품군에 특정 제품을 포함시키는 사항 등, 해당 라이선스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또는 기타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련 설명서에 의한다.

2.3 "내부 사용목적(Internal application purposes)"이란 고객 자신의 거래 및 고객 계열사의 거래를 포함한다. 특히, (i) 제3자를 위한 전산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ii) 계열사 이외의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표준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제공(예를 들어, Application Service Providing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iii) 고객 또는 그 계열사의 근로자 또는 기타 직원 이외의 자의 교육을 위해 표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EPLAN 의 사전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고객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의 통제 하에 있는 제3의 위탁업체에 의한 운용(IT 아웃소싱, 호스팅)은 허용된다. 고객이 취득한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하여 동글(dongle) 서버 및 원격 유지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 솔루션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2.4 표준 소프트웨어 및 그에 대한 사용권한의 제 3 자에 대한 양도는, 고객이 표준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기간 제한 없이 영속적인 사용권한을 부여 받고, 사용권한이 고객이 취득한 범위 및 구성에 한정되어 제 3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표준 소프트웨어는 관련 설명서 및 기타 모든 자료 등과 함께 일체로 완전하게 제 3 자에게 이전된다. 제 3 자에 대한 일시적 이전이나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표준 소프트웨어 또는 구성요소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동일한 표준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금지된다.

허용된 양도의 경우, 고객은 EPLAN 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실에 대한 증빙 문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 제 3 자가 본 약관 및 본 약관에서 부여된 사용권한이나 제한사항을 준수하기로 확약한 사실.

- 표준 소프트웨어, 동글, 일련 번호(해당하는 경우), 설명서 및 표준 소프트웨어와 함께 교부된 기타 자료(사본, 업데이트 및 이전 버전 포함)가 제 3 자에게 이전된 사실.
- 고객이 백업 사본 등 어떠한 사본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 EPLAN 은 각 표준 소프트웨어의 해당 일련 번호와 라이선스 키 등 양도에 관한 사항 및 제 3 자에 대한 사항을 통지 받은 사실.
- EPLAN 에 의한 제 3 자 일련 번호 및 라이선스 키의 재등록 신청 사실.

소프트웨어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표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고객의 모든 권리는 종료된다.

상기의 요건에 따라 허용된 표준 소프트웨어 양도에 의하여 고객과 EPLAN 간 관계에 존재할 수 있는 표준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 관련청구 또는 유지보수 계약이 자동으로 이전되거나 양도되지는 아니한다.

2.5 표준 소프트웨어 사본은 약정된 용도에 필요한 수만큼만 제작될 수 있다. 고객은 첨단 기술에 따라 표준 소프트웨어의 백업 사본을 필요한 수만큼 작성할 수 있다. 이동식 데이터 저장매체에 저장된 백업 사본은 백업 사본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원 데이터 저장매체에 대한 저작권 고지를 하여야 하며, 해당 백업 사본의 수 및 소재지를 적절하게 문서화하여야 하고 EPLAN 의 요청에 따라 EPLAN 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고객이 표준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표준 소프트웨어를 데이터 저장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온라인 사본에 대한 권리 역시 본 약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2.6 고객은 관련 법률 및 현행 판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표준 소프트웨어의 변경, 확장 및 기타 개작(adaptation)을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할 수 있다:

a) 다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역(逆)컴파일(decompilation)

b) 의도된 용도의 사용 및 하자 시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c) 명시적으로 약정된 경우. 고객은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개작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7 EPLAN 이 시정이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공된 계약 목적물(이하 "구 버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버전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새로운 버전은 본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2.8 EPLAN 이 표준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을 제공하는 경우, 구 버전과 관련된 개별 계약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EPLAN 의 명시적인 반환 요청이 없더라도 종료된다. 단, 고객은 자신의 고객 및 공급자가 구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호환성을 이유로 구 버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취득된 라이선스의 총 수는 그에 따라 증가되지 않는다. 고객은 특히, 구 버전의 유지보수 등 소프트웨어 관련용역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고객이 구 버전에 따라 원래 저장된 파일과 함께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일은 더 이상 구 버전으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9 EPLAN 은 의도된 바에 따라, 또한 약정에 따라 표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고객의 파일, 문서 및 기타 데이터에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3. 제3자 소프트웨어

3.1 제3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이용 약관이나 라이선스 약관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제3자 소프트웨어는 개별 청약에 해당 제조사(예를 들어, SAP, Autodesk)의 상호 및/제품명과 함께 기재되며 일반적으로 이용 약관을 명시한다.

3.2 제3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용역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용역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본 약관의 조항은 제3자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자 소프트웨어는 해당 제조사의 약관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규율된다.

3.3 OSS 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보 및 문서는 본 약관 Chapter A, Section 5.1 b)에 따라 표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방지(정책 및 방법)

4.1 EPLAN 은 자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신의 모든 제품 및 용역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보호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4.2 고객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의도 및 약정된 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된 하드웨어 사본 보호 장치 또는 하드락(동글) 등을 제3자에 의한 접근으로부터 주의하여 신중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본 항에서 "제3자"는 고객의 근로자 또는 계약 목적물을 약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고객과 근무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4.3 고객은 EPLAN 또는 각 라이센서/제조사의 저작권 표지, 표시 및/또는 통제 번호 또는 문자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4.4 EPLAN 은 합리적인 주기마다 제품 및 용역이 본 약관에 따라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EPLAN 은 제품 및 용역의 이용 기간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장부 및 기록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EPLAN 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고객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EPLAN 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EPLAN 은 사전에 적시에 고객에게 해당 감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5 고객이 제3자에게 EPLAN 의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관련 요소가 저장된 데이터 저장매체, 메모리 또는 기타 하드웨어(전부 또는 일부, 변경 또는 개작된 것을 포함)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직접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고객은 EPLAN 의 저장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관련 요소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I. 용역의 제공 및 업무수행

1. 용역의 제공 및 업무수행제공

1.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EPLAN 은 제공된 업무 및 결과물(이하 "업무수행결과물")에 대한 통제, 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용역 계약하의 업무수행(이하 "용역 제공")은 고객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PLAN 은 자신의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은 고객이 요청하여 달성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투입된 시간 및 자재 기준(time and material basis) 이행된 용역 및 업무수행결과물에 대하여 예상된 대금은 구속력이 없다. 예상금액의 기준은 EPLAN 의 경험에 근거하여 EPLAN 이 알고 있는 사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범위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1.2 업무를 수행함(이하 "업무수행")에 있어, EPLAN 는 고객이 본 약관 Chapter A, Section 6에 명시된 의무 등 업무수행 유형에 따라 필요한 협력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 의존한다. 고객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 이행이 부적합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지연 및/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EPLAN 은 해당 손해나 간접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약정 기한은 고객 측에 의한 의무위반 또는 부적합한 이행으로 업무의 지연이 발생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고객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EPLAN 은 다른 법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그러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3 개작 프로그래밍 및 특화작업(customising) 등 업무수행결과물과 관련된 "업무수행 내역(description of the performances)"은 고객과 업무수행결과물의 유형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의 인수와 관련하여 EPLAN 이 업무수행 전 및/또는 업무수행 중에 업무 상세조건, 기술 사양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하 "과업수행 사양")에 공동으로 작성될 수 있다.

1.4 업무수행결과물과 관련하여, EPLAN 은 (합의한 경우) 기한의 최종일에 고객에게 업무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다음 기본 절차에 따라 계약에서 합의된 매개변수에 따른 성능 검사 또는 시운전을 한 후 업무수행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진다:

a) 업무수행에 대한 인수의 결과는 EPLAN 과 고객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의사록에 기재되며, 해당 의사록은 계약 당사자들이 분류한 하자의 목록을 포함하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고객이 지체 없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 EPLAN 은 고객에게 1주일 이상의 인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해당 기한 만료 후, 고객에게 해당 기한이 명시적으로 통지되고 고객이 기한의 만료일까지 인수를 금지하는 하자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인수한 것으로 묵시적으로 선언된다. 고객이 단순히 테스트 목적이 아닌 생산적인 용도로 제품 및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인수한 것으로 본다. 단, 생산 조건에 따른 시운전이 인수절차의 일부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c) 사소한 하자(즉,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Category 2 또는 Category 3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 Category 2 또는 Category 3에 해당하는 하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일정표에 반영된다.

d) EPLAN 이 보유한 업무수행결과물이 별도로 인수 될 수 있는 폐쇄된 하위시스템(closed subsystem)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 고객은 인수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생산적인 용도로 고객이 사용하는 부품 또는 하위시스템은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e) 위 제1.4조에 명시된 절차는 인수의 효력이 없더라도 승인 또는 성능 검사에 따라 인수를 대체할 예정인 경우에 준용된다.

1.5 인수와 관련된 하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Category 1: 소프트웨어 사용 불가. 경제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조직적 수단이나 다른 수단으로 을 통해 회피할 수 없는 하자.

Category 2: 소프트웨어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함. 경제적으로 정당한 방법인 조직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하자.

Category 3: 성능 및 사용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소프트웨어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사소한 영향이 있는 하자.

2.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

2.1 어느 일방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로써 약정된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 조건을 검토하고, 지체 없이 동의 여부 및 (경우에 따라) 사유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변경 요청에 대하여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EPLAN 은 검토를 진행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EPLAN 의 검토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EPLAN 은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해당 검토에 필요한 비용 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부한다.

2.2 약정된 업무수행 범위 변경은 본 약관에서 명시된 원칙에 따라 관련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그 때까지, EPLAN 은 기존 계약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

3.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

고객은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의사결정 관련사항을 수행 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하고 신속하게 EPLAN 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EPLAN 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명한다.

4. 소유권, 저작권 및 사용권한

개별 계약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약정된 업무수행결과물과 관련하여 시간 및 영역에 제한 받지 않고 취소불가능하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한을 부여 받는다. 단, 이러한 사용권한의 부여는 개별 계약에 따라 EPLAN 의 보수 청구가 전부 지급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유권, 저작권 및 기타 사용권한은 EPLAN 가 소유한다.

5. 제3자의 재료

고객은 주문과 관련하여 고객이 EPLAN 에게 제공한 모든 재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는 EPLAN 에 의한 재료의 가공과 상충하는 제3자의 권리가 없음을 EPLAN 에게 보증한다. 고객은 모든 제3자 청구에 대하여 EPLAN 을 면책한다. 단, EPLAN 또는 EPLAN 대리인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III. 소프트웨어 용역

1. 표준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용역

EPLAN 은 EPLAN 이 제작하고 EPLAN 에 의하여 제작되었음이표시된 표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소프트웨어 용역을 제공한다.

2. 소프트웨어 용역의 목적물

2.1 본 약관에서, "소프트웨어 용역"이란 본 약관에 따른 표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의미한다. 단, 제공될 제품 및 용역의 유형과 범위는 해당 업무 상세조건을 기초로 개별 계약에 상세하게 기재된 소프트웨어 용역 수준(이하, 총칭하여 "소프트웨어 용역")에 의하여 규율된다.

2.2 용역 범위의 변경은 서면으로 합의된 사항만 효력이 있다.

2.3 소프트웨어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은 수시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의 표준 버전을 제공받는다.

고객은 고객별로 프로그램을 개조할 책임이 있다. 개별 프로그램 및 API 프로그래밍, 스크립팅, 마스터 데이터의 개별화, 배치 루틴(batch routine) 등 소프트웨어의 고객별 맞춤개조는 소프트웨어 용역에서 제외된다. 표준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 교부 후 작동성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관련 업무는 별도로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명칭공간을 가진 소프트웨어 또는 부품의 경우:
명칭공간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경우, 표준 소프트웨어 및 고객에게 특화된 개조품 간 차이와 관련된 명칭공간은 제조사

또는 EPLAN 의 명칭공간이 된다. 일반적인 개발은 제조사 또는 EPLAN 의 명칭공간에서 진행하고, 고객에게 특화된 개조는 고객의 명칭공간에서 진행한다.

3. 소프트웨어 용역의 범위

3.1 개별 계약의 기간 동안, EPLAN 은 해당 계약 체결일 현재 적용 가능한 업무수행 상세조건에 따라 해당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

3.2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업무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별도 계약의 체결을 요구한다:

- EPLAN 이 정한 운영 조건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
- 새로운 운영 시스템 출시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조 또는 소프트웨어를 EPLAN 의 소프트웨어가 승인 받지 못한 운영시스템으로 전환;
- 고객에 의한 운영지침 미준수, 기타 운영 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이동매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용역;
- 설치 장소에서의 용역;
- 핫라인(hotline)을 통한 교육 용역.

그 외의 다른 용역은 관련 주문서를 통하여 별도로 주문하여야 한다.

4. 용역 수수료

4.1 수수료는 관련 계약에 따라 연간 일시불 형태로 산정되며 당해 연도에 선불로 청구된다.

4.2 계약에 명시된 일시불 수수료는 (최초 계약연도 만료 후 최초로) 계약연도 종료 전 3개월 서면 통지로써 인상될 수 있다. 수수료가 10% 이상 인상되는 경우, 고객은 인상의 효력발생 1달 전에 사전 통지로써 소프트웨어 용역을 종료할 수 있다.

5. 소프트웨어 용역 기간

5.1 최초 소프트웨어 용역 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최초 기간 만료 후, 소프트웨어 용역 기간은 기간 만료 전 3개월 서면 통지로써 해지하지 않는 한 추가로 12개월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해당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용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종료될 수 있다.

5.2 대금이 제4.2조에 따라 인상된 경우에도 고객의 계약해지권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IV. 교육 (Training)

1. 등록 및 확인

1.1 EPLAN 의 공간 및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 교육별 교육 참가자 수는 제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의 등록은 EPLAN 시스템 가입 순서에 따른다.

1.2 교육의 등록은 EPLAN 이 서면을 통하여 확인한다. 참석 확인과 함께, 고객은 링크를 제공받으며, 고객은 링크를 통해 EPLAN 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각 교육 장소에 대한 경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육비

교육비는 세미나 개시 전에 부과되고 청구서에 기재된 지급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세미나 참석 취소 신청은 늦어도 세미나 개최일로부터 14 일 전에 EPLAN 이 수령하여야 한다. 동 기간 이후에 취소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세미나 참석비의 25%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한다.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이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함), EPLAN 은 다음 세미나 참석 예약을 허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육비 전액은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은 참가자를 교체할 수 있다.

3. 교육 과정/교육 패키지

개별 교육 과정/교육 패키지는 참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12 개월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교육 과정/교육 패키지 구성과 관련된 청구권은 소멸한다. 위 12 개월 만료 후에는 상환이나 상계 청구를 할 수 없다.

4. 업무수행

교육비는 교육, 교육 자료 및 교육 기간 동안의 식사비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임시적인 추가 개발과 세미나 프로그램에 맞는 기타 사소한 수정은 유보된다.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경우, 교육 자료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세미나의 취소

신속한 고지 없이(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 강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참가자 수가 불충하거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세미나가 취소되는 경우, 확정된 날에 개최된 세미나에 대한 교육비의 청구를 할 수 없다. EPLAN 은 고객에게 신속하게 대체 교육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객이 원하는 날짜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의 경우에, EPLAN 은 여비, 숙박비 또는 근무 시간 손실에 대하여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저작권

제공된 교육 문서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교육 참가자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문서는 EPLAN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복사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

(2017 년 12 월 현재)